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2. 16(목) 10:00

제24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
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)

행 정 재 경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
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299호

나. 제 출 자 : 고성미 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3. 2. 6.

라. 회부일자 : 2023. 2. 6.

2. 제안이유
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 개정 시행(2018. 11. 27.)에 따라 국민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국민신청실명제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2호 신설).

나. 국민신청실명제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신청 서식을 별지에 추가함(안 제5조의2 신설).

4. 관계법령

○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3, 제63조의5

5. 검토의견

○ 상위법령인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5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같은 규정 제63조의3 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

○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붙 임 **관계법령**

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
제63조의3(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1. 27.>

1.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
2.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3.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
4.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5.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
6.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,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본조신설 2014. 2. 18.]

제63조의5(정책실명제 세부 규정)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, 심의위원회의 구성,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9.>